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2018.02.0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의 학사 및 대학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총장과 관련 부서장의 업무에 관한 자문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활동과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관, 학칙 및 기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절차) 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 ② <삭제>
- ③ 관계부서는 규정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팀에 통보한다. 단, 위원회 구성시 위원의 과다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인사처장의 통제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08.08.01, 2016.03.23, 2016.09.02>
- ④ 위촉통보를 받은 인사처장은 위촉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1, 2016.03.23> [개정 2016.09.02]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02.01>

② 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부서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02.01]

제5조(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각 위원회의 기능은 당해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합당하도록 정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대행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록을 위원장이 서명날인한 후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제9조(보고 및 시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얻은 후 시행한다.

제10조(사무처리) 위원회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간사를 두어 제반 업무를 처리케 한다.

제11조(협의체 및 산하위원회) ① 위원회는 구성원간의 합의·논의 등 효과적인 업무수행,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연구 등을 위하여 관련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체 또는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02.01>

- ②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신설 2018.02.01>
- ③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산하위원회의 명칭과 구성,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18.02.01>
- ④ 산하위원회의 연구 등 결과물은 반드시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01> [개정 2018.02.01]

제12조(연구비지급)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의 전문적 연구를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2.01> [개정 2018.02.01]

제13조(관련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제6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련부서에 제출 및 청문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각 위원회 규정) 위원회의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과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부 칙

(1) 1.(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 (2) 이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08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규정은 2018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

[2021.02.0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교육과정의 개선방향을 심의 연구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03>

[개정 2021.02.0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2.03>

- 1. 교육과정 연구에 관한 사항
-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3.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2.03]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그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8.08.01, 2016.03.23> [개정 2016.03.23]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교무처 교무팀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16.03.23> [개정 2016.03.23]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이 규정은 199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21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시설관리운영위원회규정

[2016.03.2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4.12.29]

제2조(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29>

- ① 종합건설, 시설계획 및 공사설계
- ② 신축공간의 용도배정 및 사용계획
- ③ 총무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9, 2016.03.23>
- ④ 합리적인 공간 배치·조정 및 활용 <개정 2014.12.29>
- ⑤ 시설사용에 관한 조정 및 용도, 구조 변경사용 승인
- ⑥ 기타 교육기본시설 관련 사항 [개정 2016.03.23]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08.01, 2012.11.27, 2016.03.23>

② 위원회는 총무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08.01, 2012.11.27, 2016.03.23> [개정 2016.03.23]

제4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안전시설팀장이 된다. <개정 2008.08.01, 2012.11.27, 2016.03.23> [개정 2016.03.23]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안전시설팀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12.11.27, 2016.03.23> [개정 2016.03.23]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이 규정은 1997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제교류위원회규정

[2016.04.2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국제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08.01>

- 1. 국제화 프로그램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2. 외국대학과 학술교류협정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3. 기타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4. 글로벌라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08.0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그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기획처 대외교류센터팀장이 된다. <개정 2008.08.01, 2016.04.21> [개정 2016.04.21]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기획처 대외교류센터로 한다. <개정 2008.08.01, 2016.04.21> [개정 2016.04.21]

제9조(기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1.(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대외협력/홍보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 (2)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1월13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기획조정운영위원회규정

[2023.11.0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기획조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중 기획처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한다. <개정 2008.03.01, 2008.08.01, 2009.02.19, 2021.02.28., 2021.11.01., 2023.11.01.>

- 1. 정책사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부속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 3. 학교 기구 및 직제에 관한 사항
- 4. 기획예산팀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 5. <삭제 2023.11.01.>
- 6.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7. <삭제 2021.02.28>
- 8. 교책연구소 설립 및 폐소에 관한 사항
- 9. 교지 활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0. 기타 중요 사항

[개정 2023.11.01]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08.01>

② 위원회는 기획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08.01>

제4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그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팀장이 된다.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기획처 기획예산팀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제9조(기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1.(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대학발전위원회,강남사회복지 관운영위원회,어린이집운영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 (2)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0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08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0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규정은 2021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규정은 2021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규정은 2023년 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단과대학운영위원회규정

[2016.03.2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단과대학 중·장기 특성화 발전계획 수립 및 확정에 관한 사항
- 2. 단과대학 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입학전형방법 개발에 관한 사항
- 4. 학생지도에 필요한 사항
- 5.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6. 실험실습비운영에 관한 사항
- 7.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및 기타 중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해당 대학의 전공 수를 고려하여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해당 대학 소속 학부장 및 전임교수 중에서 해당대학 학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해당 대학의 학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 대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08.01, 2016.03.23> [개정 2016.03.23]

제9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소속 대학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대학교육개혁위원회규정

[2016.03.23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개혁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육개혁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위원회 및 구성

제2조(교육개혁위원회) ① 교육개혁위원회는 개혁추진분과위원회와 개혁평가분과위원회,개혁홍보분과위원회의 합동회의체로서 평가활동을 과학적바탕위에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한다.

- ② 교육개혁위원회는 개혁추진분과위원회와 개혁평가분과위원회, 개혁홍보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역할분담, 추진 및 절차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을 기능으로 한다.
- ③ 교육개혁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교무, 학사 등 대학 운영과 시설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본분과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이를 대행 한다.

제3조(개혁추진분과위원회) ① 개혁추진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된다.

- ② 개혁추진분과위원회의 교육개혁에 관한 연구함을 기능으로 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08.01, 2015.06.01>
- 1. 교육개혁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 2. 교육개혁연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
- 3. 교육개혁에 필요한 자료 및 방안 제시
- 4. 교육프로그램, 입시개선 및 교육여건 개선방안 모색
- 5. 교육개혁추진보고서 안의 작성 및 교육개혁위원회 보고
- 6. 교육부의 교육개혁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06.01]

제4조(개혁평가분과위원회) ① 개혁평가분과위원회는 교육개혁을 객관성있게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5인 이하의 교원, 교직원, 동문, 지역사회 인사 등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 ② 개혁평가분과위원회는 본교 교육개혁 연구안 및 그 시행결과를 심층분석, 평가함을 기능으로 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06.01>
- 1. 교육개혁 평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2. 교육개혁 평가를 위한 준거의 연구 작성
- 3. 교육개혁안 및 결과의 분석, 검토
- 4. 교육부의 교육개혁 추진과제의 평가
- 5.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안의 건의
- 6. 평가 보고서 안의 작성 및 교육개혁위원회 보고
-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06.01]

제5조(개혁홍보분과위원회) ① 개혁홍보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본교의 교육개혁추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 ② 개혁홍보분과위원회는 교육개혁에 관한 여론의 수렴 및 추진 홍보를 기능으로 하며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06.01>
- 1. 교육개혁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 2. 교육개혁에 관한 여론 수집 및 수렴
- 3. 교육개혁 홍보의 시행 및 자율적 참여 유도
- 4. 교육부의 교육개혁 추진과제의 홍보
- 5. 교육개혁에 관한 강좌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 6. 교육개혁 홍보 보고서안 작성 및 교육개혁분과위원회 보고
-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06.01]

제 3 장 운영

제6조(위원장) 제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통리한다.

제7조(임기) 제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그외 위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제 위원회는 총장의 개회 요청이 있을 경우나 3인이상 위원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개회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제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교육개혁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무처 교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8.08.01, 2016.03.23>

② 간사는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반 자료 및 의안 정리 등의 업무를 하며 제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 후 보관한다. [개정 2016.03.23]

제10조(소관부서) 교육개혁위원회의 소관부서는 교무처 교무팀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16.03.23> [개정 2016.03.23]

제11조(관계부서 및 관계인의 협조) 제 위원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부서 및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및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 또는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부 칙

- (1) 1.(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 (2) 이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3) ③항 개정의 시행일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 (4) 이 개정규정은 199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규정은 2008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10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대학발전기금조성위원회규정

[2019.04.1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효율적인 모금계획의 수립을 위한 강남대학교발전기금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19.04.18> [개정 2019.04.1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08.01, 2011.03.01, 2019.04.18>

- 1. 발전기금 조성 계획 수립
- 2. <삭제 2008.08.01>
- 3. 발전기금조성 홍보에 관한 사항
- 4. 기부자 예우에 관한 기본 사항
- 5. <삭제 2019.04.18>
- 6. <삭제 2008.08.01>
- 7. 유치공로자 예우에 관한 사항
- 8. 기타 발전기금조성에 관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9.04.18]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대외교류센터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04.21> ② 위원회는 대외교류센터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4.21> [개정 2016.04.21]

제4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08.01>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08.01>

제6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대외교류센터 대학발전기금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8.08.01, 2016.04.21> [개정 2016.04.21]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대외교류센터로 한다. <개정 2008.08.01, 2016.04.21> [개정 2016.04.21]

제9조(기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1) 이 규정은 1998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9)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의 강남대학교 발전기금 관리·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대학복지위원회규정

[2016.03.2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하며, 학생복지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 회로서 강남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의 일상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증진과 장학기금의 조성등 교육여건의 향상에 기여하며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1. 복지기금 운용
- 2. 복지시설 증진
- 3. 복지매장 임대 및 계약체결
- 4. 기타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총무처장, 총학생회장, 학생복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16.03.23> [개정 2016.03.23]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생처 장학복지팀장이된다.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및 회계) ① 모든 임대계약은 공개경쟁입찰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상의 성질 목적 또는 사업운영상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한다.

- ② 위원회의 회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르며,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복지매장의 임대료, 찬조금과 기타수입으로 하며 잉여금은 장학기금, 복지기금, 환경개선기금, 기타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위하여 적립 또는 지출 한다.
- ④ 전항에 기술된 잉여금의 운영은 복지장학금 50%, 적립금 40%, 총학산하 학생복지위원회 운영기금으로 10%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장학금을 제외한 기금의 세부사용계획은 대학복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학생처 장학복지팀으로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규정

[2020.08.2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 학칙 제17조의 2에 의거 대학입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연구 개발
- 2.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 3. 대학입학전형의 사전,중간,사후자체감사실시
- 4. 입학전형 주요과정에 입회,확인 실시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칙 제17조 2에 의하여 구성하되 본교의 교원 및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12.23, 2015.06.01, 2020.08.26>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20.08.26.> [개정 2020.08.26]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2012.10.09> ② 위원회의 원활한 행정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며 감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항 신설 2012.10.09><개정 2015.06.01> [개정 2015.06.01]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위원장 책임하에 간사가 사무를 관장을 하며 위원회 활동에 관한 관계서류는 입시종료후 기획처장에게 이관한다. <개정 2008.08.01>

제9조(기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브 친

- (1) 이 규정은 199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규정은 201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10 이 규정은 2020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

[2024.10.2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68조에 의거하여 본교의 입학시험관리를 위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두며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8.25>

- 1. 입학제도의 개발 및 계획 심의
- 2. 입학전형관리 기술의 개발
- 3. 입학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
- 4. 입학시험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제반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5. 입학전형관리의 주요사항 심의
- 6. 입학정보의 개발과 홍보
- 7. 기타 입학시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8.25]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맡으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08.01, 2016.03.23, 2024.10.23.>

- ② 위원회는 입학처장, 교무처장, 장애학생교육복지위원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08.01, 2016.06.21, 2024.10.23.>
- ③ 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0.08.25>

[개정 2024.10.23]

제4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8.25>

[개정 2020.08.25]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12.23>

제6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입학전형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10.12.23, 2016.03.23> [개정 2016.03.23]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입학처로 한다. <개정 2008.08.01>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 (1) 이 규정은 1987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규정은 1991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규정은 199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6) (관련규정의 폐지) 이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있던 장애인입학사정심의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 (7) 이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¹¹ 이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12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규정은 2020년 0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규정은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총무운영위원회규정

[2016.03.2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총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중 총무처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연구를 한다. <개정 2008.08.01, 2016.03.23>

- 1. 총무처 업무의 중요한 사항
- 2. 총무처장이 부의하는 사항
- 3. 기타 중요 사항 [개정 2016.03.23]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08.01, 2016.03.23> ② 위원회는 총무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08.01, 2016.03.23> [개정 2016.03.23]

제4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그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처 총무구매계팀장이 된다. <개정 2008.08.01, 2016.03.23> [개정 2016.03.23]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총무처 총무구매팀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16.03.23> [개정 2016.03.23]

제9조(기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08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문방송운영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신문·방송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신문·방송국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신문·방송국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 3. 신문제작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중요 사항
- 4.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기타 중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신문방송국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03.0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그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03.01>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신문방송국 직원으로 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신문방송국으로 한다. <개정 2008.03.01>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0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직원인사위원회규정

[2016.09.02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 인사 규정 제6조(직원인사위원회)에 의하여 설치하는 "직원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의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직원의 인사관리 및 신규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 임시직원(비정규직원)의 신규채용 및 무기계약직원으로의 전환 사항 포함 <개정 2015.10.01>
- 2. 직원의 포상,징계에 관한 사항
- 3. 기타 총장이 수임하는 사항 [개정 2015.10.01]

제3조(구성) ① 직원인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노동조합대표 3명, 인사처장, 기획처장, 총장이 지명하는 직원 4명으로 하고, 인사처장과 기획처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15.10.01, 2016.09.02>

② 노동조합 지부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01> [개정 2016.09.02]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인사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08.01, 2016.03.23>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대행한다. [개정 2016.03.23]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총장이 명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회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관계인출석)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의견을 물어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 또는 보고를 청취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본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 하여 총장에게 보고후 보관한다.

제8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인사팀으로 한다. <개정 2008.08.01,2016.03.23> [개정 2016.03.23]

제9조(간사) 위원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10조(기밀유지 의무) 위원회 위원 및 관련 참석자는 회의내용에 관하여 기밀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과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5년 3월2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1989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1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2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13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14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15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

교무운영위원회규정

[2016.03.2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사 및 교무에 관한 중요 사항
- 2. <삭제>
- 3. <삭제>
- 4. <삭제 2008.08.01.>
- 5. 교무처장의 부의하는 사항
- 6. <삭제 2008.08.01.>
- 7. <삭제 2008.08.01.>
- 8. 기타 중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그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무처 교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8.08.01, 2016.03.23> [개정 2016.03.23]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교무처 교무팀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16.03.23> [개정 2016.03.23] 제9조(기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학생복지운영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생처 업무의 중요사항
- 2. 학생처장이 부의하는 사항
- 3. 기타 중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그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생처 장학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08.08.01>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학생처 장학복지팀으로 한다.

제9조(기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대학진료소운영위원회, 생활관운영위원회, 자원복지센타운영위원회, 학생생활상담소운영위원회, 학생서비스센타운영위원회, 장학운영위원회,학생복지위원회규정, 취업지도위원회규정,학생지도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 (3)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홍보위원회규정

[2016.04.2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장단기 홍보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2. 홍보정책 및 방향에 관한 사항
- 3.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09>
- 4. <삭제 2008.08.01.>
- 5. <삭제 2012.10.09.> [개정 2012.10.0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08.01, 2012.10.09>

- 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기획처장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12.10.09, 2015.11.02, 2016.04.21>
- ③ 위원은 입학처장, 대외교류센터장, 기획부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2.10.09], <개정 2015.11.02, 2016.04.21>

④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2.10.09] [개정 2016.04.21]

제4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0.09>

[개정 2012.10.09]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10.09> [개정 2012.10.09]

제6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대외교류센터 홍보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8.08.01, 2012.10.09, 2015.11.02, 2016.04.21> [개정 2016.04.21]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기획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9, 2015.11.02, 2016.04.21>

[개정 2016.04.21]

제8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대외교류센터로 한다. <개정 2008.08.01, 2015.11.02, 2016.04.21> [개정 2016.04.21]

제9조(기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대외협력/홍보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 (3)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1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15년 11월 02일로부터 시행한다.
- (7)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Pacific Science Review 운영위원회규정

[2016.09.02 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본교와 러시아 극동국립과학기술대학, 일본 고쿠시칸 대학과 중국 HIT(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학술지 Pacific Science Review의 간행 및 이와 관련된 국제학술교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개정 2008.08.01>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본교와 러시아극동국립과학기술대학이 공동으로 발간하는 학술지 Pacific Science Review의 간행 및 이와 관련된 국제학술교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3조(소재) 본 위원회는 본교 내에 위치한다.

제4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Pacific Science Review의 발간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2. Pacific Science Review와 관련된 국제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 3. 위원장과 편집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 4. 기타의 중요 사항

제5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총괄책임위원 1인과 연구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08.01>

제6조(임명 및 임기) ① 위원장은 부총장, 부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08.01, 2016.09.02>

- ② 총괄책임위원과 연구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총괄책임위원과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9.02]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편집위원회) 본 위원회에는 총괄책임위원과 연구위원으로 구성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들을 논의한다.

- 1. Pacific Science Review 편집방 침및 투고에 관한 사항
- 2. Pacific Science Review 심사 및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 3. Pacific Science Review 편집과 관련된 기타 사항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무처 연구지원팀장이 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보관한다.

제11조(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 (1) 이 규정은 2001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규정

[2023.08.24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개정 2016.12.16]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08.24.>

-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3.08.24]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08.24.>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08.24.>
 - 1.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 2.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개정 2023.08.24]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0.18, 2016.03.23> [개정 2016.03.23]

제5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9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업무수행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연구를 위하여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의 연구 결과물은 반드시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비지급)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전문적 연구를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로 한다. <개정 2016.03.23> [개정 2016.03.23]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과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교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따른다.

부 친

- (1)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규정은 2005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23년 0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인력개발운영위원회규정

[2022.08.1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인력개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제1조의2(분과위원회) 위원회에는 교원인력개발분과위원회와 직원인력개발분과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2008.08.0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분과별로 다음 각호 각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08.01, 2016.03.23>

- 1. 교원인력개발분과위원회
 - 가. 연구비 관련 사항
 - 나. 연구년제 교원 선발
 - 다. 기타 인사처장이 부의하는 사항
- 2. 직원인력개발분과위원회
 - 가. 직원 인사 및 조교임면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인사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03.23]

제3조(구성)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08.01, 2016.03.23> ② 교원인력개발분과위원회는 인사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하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08.01, 2016.03.23, 2022.08.16.>

- ③ 직원인력개발분과위원회는 인사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4인 이하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8.08.01, 2016.03.23> ④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분과별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팀 팀장이 된다. <개정 2008.08.01, 2016.03.23> [개정 2022.08.16]
- 제4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그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분과별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08.01>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08.01>

제6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인사팀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16.03.23> [개정 2016.03.23]

제8조(기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22년 0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학원선교위원회규정

[2012.09.12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교목실의 정책자문 및 실무 협력기구로서 학원선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규정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문한다. <개정 2010.3.1, 2012.09.12>

- 1. 본교의 창립이념과 기독교 정체성의 구현
- 2. 각 단과대학과 각 학부(과)의 인성과 신앙지도 <개정 2012.09.12>
- 3. 각종 예배, 학원선교를 위한 활동 <개정 2012.09.12>
- 4. 채플운영 <신설 2012.09.12>
- 5. 강남문화운동
- 6. 교직원예배 및 교직원 신앙교육(신임 교직원 교육 및 신앙수련회) 운영 <신설 2012.09.12>
- 7. 교목실 인성교육 인증 사역
- 8. 채플사역팀 및 기독동아리 운영 <개정 2012.09.12>
- 9. 창학이념의 기독교정신 구현을 위한 교과목 연구・개발・지원 <신설 2012.09.12>
- 10. 하계 및 동계 대외(해외) 선교·봉사 활동 <신설 2012.09.12>
- 11. 기타 교목실 사역 [개정 2012.09.12]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교목실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며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3.1>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3.1>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0.3.1, 2012.09.12> [개정 2012.09.12]

제7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교목실로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원선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1) 이 규정은 200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12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12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원교과과정심의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과과정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과과정 연구에 관한 사항
- 2.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3. 교과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일반대학원 교학부장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교학부장의 제청을 받아 원장이 위촉하는 9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그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대학원교학팀장이 된다.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8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대학원 교학팀으로 한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2021.02.15 개정]

제 1 장 총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정관 제3절 제36조의 2에 의거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평의원회는 총장의 직속 하에 둔다.

제3조(협력) 평의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부서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

제4조(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동문, 학부모,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자 및 교육유공자, 기독교교회지도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12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22, 2021.02.15>

- 1. 교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 3인
- 2.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 2인
- 3. 조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1인
- 4.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1인
- 5. 동문을 대표할 수 있는 자 1인
- 6. 학부모를 대표할 수 있는 자 1인
- 7.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자 1인
- 8. 교육유공자 1인
- 9. 기독교교회 지도자 1인
-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lceil 개정 $2021.02.15\rceil$

제5조(위촉) ① 평의원회 의원은 각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② 제①항의 평의원회 의원 추천 등에 대하여는 대학평의원회운영지침으로 정한다.
- ③ 교원, 직원을 대표하는 단체의 추천자 수는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 수의 2배수로 하여야 한다.
- ④ 각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단체 또는 총회의 결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한다. [개정 2012.10.25]

제6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8.02.01>

- ② 의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1월내 전조의 절차에 의하여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③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2.01]

제7조(의장 및 부의장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며,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개정 2018.02.01>

- ② 평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에서 호선하되,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회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02.01>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 ④ 평의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지원부서의 팀장이 된다.
- ⑤ 평의원회의 지원부서는 비서실로 한다. <개정 2015.11.02> [개정 2018.02.01]

제8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18.02.01, 2020.12.23>

-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12.23]

제8조의2(자격상실) ① 대학평의원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의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
- 2. 대학평의원으로서 기밀준수를 위반하였거나 대학평의원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은 경우.
- 3. 대학평의원으로서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 ② 교수 및 직원대표 평의원은 임기 중 다음 각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의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휴직 또는 퇴직
- 2.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자
- 3. 연구년 또는 6월 이상의 해외파견근무(연수)
- ③ 학생대표 평의원은 제적, 자퇴, 휴학, 졸업(수료)과 같이 신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④ 학부모대표 평의원은 자녀 학생의 제적, 자퇴 및 졸업(수료)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⑤ 상기 항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평의원의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해당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위촉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의결정족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결원으로 처리하고 잔여임기 만료후에 위촉한다. [본조신설] 2010.6.25

제8조의3(사임) ① 평의원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 및 의장에게 사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평의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되, 선출방식은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궐위 평의원의 잔여임기가 1개월 미만일 때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사 정족수에 지장이 없는 한 보선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0.06.25

제 3 장 심의

제9조(회의) ① 평의원회는 이사장,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의 2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달이 가능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평의원회의 심의는 통지한 사항에 한한다. 다만 통지 이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출석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심의권은 평등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원의 심의에 따른 의사표시는 대리인이나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의사결정) ① 평의원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 ② 평의원회가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의사결정시 구성원의 협의·논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체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2.01>
- ⑤ 제4항의 협의체 또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02.01> [개정 2018.02.01]

제11조(기밀준수의무 등) ① 평의원회 의원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는 지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② 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2.01, 2020.10.22> [개정 2020.10.22]

제13조(운영지침)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과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 4 장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제14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08.09.01

제15조(추천위원회의 구성)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 하는 자 2인
- 2.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 3. 용인강남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신설 2012.10.25]

[본조신설] 2008.09.01

[개정 2012.10.25]

제16조(추천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본조신설] 2008.09.01

제17조<삭제> 2012.11.27 [개정 2012.11.27]

제18조(추천위원회 운영지침) 추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운영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09.01

- (1) (시행일)이 규정은 2006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이 규정에 의한 최초의 대학평의원회 의원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월내 위촉하여야 한다.
- (3) 이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1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규정은 2015년 11월 02일로부터 시행한다.
- (9) 이 규정은 2018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10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11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12 이 규정은 2021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 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 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 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기타 부정행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 를 가하는 행위
 - 나.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다.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적절한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 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 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연구비의 조성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과 해당 연구 관련 수행자(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연구윤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예비조사 및 본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
- 2.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 4. 교내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5. 교내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주관부서) 본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부총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④ 부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행정직원 중 <math>1인을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산학협력단에 서면으로 제보할 수 있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제보자가 허위 등으로 제보할 경우 제보자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예비조사의 실시 및 방법 등)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위원장 승인 하에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② 예비조사는 산학협력단장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 ③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 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 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본조사의 실시 및 방법 등)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 검토 후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에 본조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12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인 이상 포함하며,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인의 외부인 사를 포함한다.
-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 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 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날인
-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17조(판정) ①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이를 심의하고 조사결과를 확정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이를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9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최종보고서는 연구지원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 하에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교 징계위원회에 본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이첩한다.

② 징계조치는 본교 징계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산학협력단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2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2024.05.2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0조의2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0.18, 2014.11.28, 2020.11.20>

- 1. 등록금 및 등록금 인상률
- 2.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3. 예산(안)의 심의
- 4. 결산(안)의 심의 <신설 2014.11.28>
- 5. 기타 중요 사항
- ② 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자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02.23><개정 2021.02.03>
- ④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02.23>
- ⑤ 제1항제1호의 등록금 산정 시「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특례법」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 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법 제7조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 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하며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등록금 산정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0.11.20>< 개정 2021.02.03>

[개정 2021.02.03]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 중 구성단위를 대표 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4.11>

- 1. 기획처장 1인
- 2. 교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 1인
- 3.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 1인
- 4.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3인
- 5. 동문을 대표할 수 있는 자 1인
- 6. 외부 관련전문가 1인
- ② 동조 제1항 제6호의 관련전문가로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02.01>
- ③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동문 위원은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 위원은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01, 2018.04.11, 2021.02.03>

[개정 2021.02.03]

제4조(위촉) ① 위원은 각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② 교원, 직원, 학생, 동문을 대표하는 단체의 추천자 수는 각 구성단위별 위원 수의 2배수로 하여야 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2.23>
- 1. 교원 위원은 전임교원으로서 본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교원
- 2. 직원 위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으로서 본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직원
- 3. 학생 위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
- 4. 동문 위원은 대학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본교 동문
- ③ 외부관련전문가의 경우 소관부서에서 학생대표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02.03>
- ④ 각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단체 또는 총회의 결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한다.

[개정 2021.02.03]

제5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2.03> [개정 2021.02.03]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심의위원 임기와 같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제7조(자격상실) ①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
- 2. 위원으로서 기밀준수를 위반하였거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은 경우.
- 3. 위원으로서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 ② 교수 및 직원대표 위원은 임기 중 다음 각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휴직 또는 퇴직
- 2.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자
- 3. 연구년 또는 6월 이상의 해외파견근무(연수)
- ③ 학생대표 위원은 제적, 자퇴, 휴학, 졸업(수료)과 같이 신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④ 제1항내지 제3항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위원의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해당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위촉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의결정족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결원으로 처리하고 잔여임기 만료 후에 위촉한다.

제8조(사임) ① 위원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 및 위원장에게 사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되, 선출방식은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궐위 위원의 잔여임기가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에 지장이 없는 한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06.16.>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6.16.>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8.02.01.> <개정 2022.06.16.>
 - 1.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회의 개최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통지 <신설 2022.06.16.>
 - 2. 회의 자료: 회의 개최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송부 <신설 2022.06.16.>
- ④ 심의는 통지한 사항에 한한다. 다만 통지 이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8.02.01.>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02.01.> <개정 2021.02.03.>
- 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06.16.>

[개정 2022.06.16]

제9조의2(구성원 협의 등) ① 의사 결정 시 구성원의 협의·논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체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체 또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8.02.01]

[신설 2018.02.01]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고등교육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2.01., 2018.04.11., 2024.05.23>
-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04.11> [개정 2024.05.23]

제12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기획예산팀으로 한다.

제13조(기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02.01]

- (1)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13년 08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18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18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규정은 2018년 0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규정은 2021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22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11 이 규정은 2024년 0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

학위검증위원회규정

[2016.03.23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 학위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2.01.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학위검증이라 함은 검증대상자의 채용, 입학, 기타의 과정에서 검증대상자가 제출한 학위의 진정성을 객관적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 2. 학위의 진정성 이란 검증대상자가 소지하였다고 주장하는 학위가 정확하게 법적으로 유효한 기관이 발급한 학위로서, 검증대상자가 해당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당학위를 수여받은 사실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해당기관 등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3. 전 2항의 학위의 진정성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적법성(설립의 신고, 인가, 승인여부)여부, 정부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인정 (accreditatiom or recognition)여부를 포함한다. 단, 인증 또는 인정에 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통상적인 관례,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 위원회가 판단한다.
- 4. 검증 대상자라 함은 재직 중인 교직원, 신규 교직원 임용 후보자, 입학생(편입과 재입학 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 등에 대하여 제보 또는 위원회 등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를 말한다.
- 5. 1차 조사라 함은 학위취득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6. 2차 조사라 함은 1차 조사를 바탕으로 또는 검증위원회의 의결로 제2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위취득의 사실관계 여부를 검증하는 공식적 인 조사 및 판단을 의미한다.
- 7. 학위조회 서비스라 함은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검증대상자가 보고한 학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 8.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후속조치)라 함은 학위검증 결과에 따라 검증대상자의 임용취소, 입학취소 기타 공사법상의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01.26]

제3조(학위검증의 사유) 학위검증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제보, 문제의 제기, 또는 의혹이 있거나, 기타 검증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1.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이력서 및 각종 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
- 2. 연구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학위가 취소된 경우에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고 사용한 것
- 3. 위조 또는 변조된 학위기를 입학, 채용 등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
- 4. 해당국가에서 적법하거나 인정된 방법에 의하여 발급되지 않은 학위를 사용한 것
- 5. 해당 학위를 수여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기망 등의 방법으로 수여받은 학위를 사용한 것

[신설 2012.01.26]

제 2 장 학위검증위원회 운영

제4조(기능) 위원회는 검증대상자의 학위검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1차 및 2차 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
-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5. 학위검증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2.01.26]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처장을 포함한 본교 전임교원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3.23>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기간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운 위원이 임명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또는 총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03.23]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제10조의 제2차 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8조의 전문위원 중 1인을 간사로 한다. [신설 2012.01.26]

[건글 2012.01.20]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01.26]

제8조(전문위원)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2.01.26]

제 3 장 학위검증

제9조(학위검증 절차) ① 위원회는 검증대상자의 학위취득 관련 보고의 진실성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해외학위 취득에 대하여는 최소한 1회 이상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1차 조사는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 및 민간단체의 학위조회 서비스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제1차 조사의 경우에는 본교 총장의 판단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대학의 관련 부서에 학위검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④ 제보자의 추가 제보가 있을 경우 또는 위원회에서 2차 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2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01.26]

제10조(제2차 조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제2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제2차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상 포함하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관계가 있는 자는 제2차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④ 제보자가 있을 경우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⑤ 제2차 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신설 2012.01.26]

제11조(제보방법) ① 제보자는 위원장 및 위원회 간사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②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2.01.26]

제12조(기피.제척.회피) ① 검증대상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2.01.26]

제13조(절차적 권리의 보장)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도 검증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 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2.01.26]

제14조(조사 착수 및 기간) ① 위원회가 2차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그 필요성을 인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② 제2차 조사위원회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검증절차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차 조사위원회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01.26]

제15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제2차 조사위원회는 검증대상자·제보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증대상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제2차 조사위원회는 검증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검증대상자가 제①항 내지 ②항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적, 면직, 징계, 학위취소 및 임용거부 등을 총장에게 건의할수 있다.

[신설 2012.01.26]

제16조(판정) ① 제2차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합의를 통해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01.26]

제17조(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제2차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최종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검증대상자의 신원정보
- 2. 검증 대상자의 학위취득 사실여부
- 3. 관련 증거 및 증인
- 4.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대상자 및 제보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 5. 조사위원 명단
- 6. 기타 필요한 사항

[신설 2012.01.26]

제18조(조건부 신규임용 및 입학허가) ① 학위검증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검증대상자의 교육, 연구 및 학습활동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조건부로 검증대상자의 신규임용 및 입학을 허가할 것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학위취득이 허위라고 판정된 경우 위원회는 제적, 면직, 징계, 학위취소 및 임용거부 등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2.01.26]

제19조(제보자와 검증대상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제보자의 성명 기타 인적사항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학위검증 관련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학위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검증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검증대상자의 학위의 진정성이 판명된 경우검증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검증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2.01.26]

제20조(비공개 원칙 및 정보공개청구권) ① 제19조에 따른 최종보고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검증대상자 및 제보자는 최종보고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 보호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01.26]

제21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제2차 조사위원회로부터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7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검증대상자의 학위취득이 허위라는 제2차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승인한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 및 이에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본교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총장에게 이에 상응한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한 제재조치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⑤ 학위검증과 관련된 기록물은 조사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2.01.26]

제22조(결과의 통지) ① 위원회는 제1차 조사결과를 완료한 후 5일 이내에 학위검증결과를 검증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차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증대상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01.26]

제23조(재심의) ① 검증대상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검증대상자 및 제보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2.01.26]

제 4 장 보칙

제24조(경비) 본교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01.26]

제25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신설 2012.01.26]

- (1) 이 규정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입학사정관제기획위원회 규정

[2018.09.1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입학사정관제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2.09.2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09.17>

- 1. 입학사정관제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2. 입학사정관제 관련 정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3. 입학사정관 선발 및 포상, 징벌 등에 관한 사항
- 4. 대입전형 연구에 관한 사항
- 5. 기타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8.09.17]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기획처장, 인사처장, 교무처장, 입학전형관리팀장을 당연직으로 전임사정관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총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05.01, 2016.03.23, 2016.09.02> [개정 2016.09.02]

제4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09.20]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신설 2012.09.20]

제6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임사정관이 된다.<개정 2015.05.01> [개정 2015.06.01]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09.20]

제8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입학전형관리팀으로 한다. <개정 2016.03.23> [개정 2016.03.23]

제9조(기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09.20]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2.09.20]

- (1) 이 규정은 201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18년 0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입학사정관전형위원회 규정

[2024.10.2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입학사정관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2.10.0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5.01, 2019.10.18, 2024.10.23.>

- 1. 학생부 종합전형의 계획(안)에 관한 심의
- 2.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 지원자의 지원자격 심의 및 사전 불합격자 판정
- 3. 학생부 종합전형 진행과정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심의
- 4. 학생부 종합전형 제출서류에 대한 표절여부 판정
- 5. 학생부 종합전형 제출서류 작성금지항목 기재에 대한 심의
- 6. 학생부 종합전형의 예비심사, 서류평가, 면접평가를 포괄적으로 종합심의하여 최종 합격자 판정
- 7. 기타 학생부 종합전형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24.10.23]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입학처장, 입학전형관리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임사정관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6.21> [개정 2016.06.21]

제4조(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6.21>

② 위원의 임기는 입학전형관리팀장의 경우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전임사정관의 경우 전임사정관 업무를 부여 받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3.23, 2016.06.21> [개정 2016.06.21]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5.05.01>

[개정 2015.06.01]

제6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위원 중 전임사정관이 된다.<개정 2015.05.01> [개정 2015.06.01]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09]

제8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입학전형관리팀으로 한다. <개정 2016.03.23> [개정 2016.03.23]

제9조(기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09]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2.10.09]

- (1) 이 규정은 201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이의처리위원회규정

[2016.03.2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부 종합전형 이의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01> [개정 2015.06.0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5.01>

- 1.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 이의 제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2. 이의처리위원회 처리에 불복할 경우 법률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문
- 3. 기타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 이의 제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15.06.01]

제3조(구성) ① 이의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장, 자체감사위원장, 입학전형관리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임사정관 3인을 포함하여 총7인 이내로 총장이 임명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05.01, 2016.03.23>

②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고문변호사 1인, 법학전공 교수 3인, 입학전형관리팀장, 전임사정관 총7인 이내로 총장이 임명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05.01, 2016.03.23> [개정 2016.03.23]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함이 없으며, 심의 사항 발생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2.10.09]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신설 2012.10.09]

제6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위원 중 전임사정관이 된다.<개정 2015.05.01> [개정 2015.06.01]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09]

제8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입학전형관리팀으로 한다. <개정 2016.03.23> [개정 2016.03.23]

제9조(기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09]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2.10.09]

- (1) 이 규정은 201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학과평가위원회규정

[2025.02.0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학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2.06.>

[개정 2025.02.06]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연구, 자문 또는 심의를 한다. <개정 2025.02.06.>

- 1. 학과(전공) 평가 목표 및 방향 설정
- 2. 학과 평가지표 개발
- 3. 학과 평가계획 수립
- 4. 학과 평가결과 분석
- 5. 학과 평가결과 활용

[개정 2025.02.06]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3> [개정 2020.12.23]

제4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그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12.24]

제5조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12.24]

제6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13.12.24〕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4]

제8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기획처 IR센터로 한다. <개정 2023.04.28.> [개정 2023.04.28]

제9조(기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4]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3.12.24]

부 친

- (1)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23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2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서평가위원회규정

[2016.03.2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부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대학의 성과지향적인 행정부서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대학 경영체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3.12.24]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연구, 자문 또는 심의를 한다.

- 1. 부서평가 목표 및 방향 설정
- 2. 부서 평가지표 개발
- 3. 부서 평가계획 수립
- 4. 부서평가결과 분석
- 5. 부서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직원 업적평가 등)

[신설 2013.12.24]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3.12.24]

제4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그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12.24]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12.24]

제6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13.12.24〕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4]

제8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인사처 인사팀으로 한다.<개정 2016.03.23> [개정 2016.03.23]

제9조(기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4]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3.12.24〕

- (1)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비상경영대책위원회규정

[2015.11.02 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사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비상경영체제의 목적을 빠른 시일내에 달성하여 경쟁력 있는 대학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비상경영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4.08.27]

제2조(구성)①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4.08.27]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자문한다.

- 1. 비상경영체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조직 운영체계 조정
- 2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학문영역별통합관리 체계 운영
- 3. 유관 행정부서별 통합관리 체계 운영
- 4. 효과적인 예산관리체계 마련 및 정착
- 5. 구성원들과의 대학경영방향 공유 및 의견수렴
- 6. 기타 대학경영혁신과 관련된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각 위원에게 별도의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4.08.27]

제4조(임기)위원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4.08.27]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08.27]

제6조(간사)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4.08.27]

제7조(회의록작성 및 보관)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아총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신설 2014.08.27]

제8조(소관부서)위원회의 소관부서는 비서실로 한다.<개정2015.11.02> [개정 2015.11.02]

제9조(기밀유지의무)위원회의 위원 및참석자는 회의내용 및제반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08.27]

제10조(운영세칙)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4.08.27]

- (1) 이 규정은 201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5년 11월 02일로부터 시행한다.

윤리위원회규정

[2022.01.0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5.12.08]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교 내 연구 윤리 및 직무 윤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원, 직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12.08]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 및 직무 윤리 전 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5.12.08〕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본교 구성원의 윤리 전반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보고 ·건의 및 기타 조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1. 윤리강령(또는 윤리 규정) 및 윤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및 해석에 관한 사항
- 2. 본교 구성원의 윤리성 및 품위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 3. 윤리강령 또는 본교 구성원으로서의 직무 규정 위반 및 기타 품위손상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친 사항
- ②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위원회에 사건을 이관한다. <개정 2020.01.06., 2022.01.03.>
- 1.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 인권센터
- 2. 연구윤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 3. 생명윤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 4. 직무윤리 : (교원)교원인사위원회, (직원)직원인사위원회 [개정 2022.01.03]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인사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겸직한다. <개정 2016.03.23>
-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03.23]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12.08]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총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회의의 소집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안건 및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통지 또는 안건을 발송함이 부적당한 사안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안 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⑤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원이 아닌 사람을 참석하게 하거나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12.08]

제8조(심의요청) ① 본교 구성원 또는 본교 부서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교원이나 직원의 특정행위에 대하여 윤리강령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본교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소정양식의 서면으로 특정교원이나 직원의 특정행위에 대하여 윤리강령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①항과 ②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요청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친다.
- ④ 제보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15.12.08]

제9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야야 한다.

[신설 2015.12.08]

제10조 (비밀유지의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8]

제11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08]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2.08]

- (1) 이 규정은 2015년 12월 08일로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20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22년 01월 03일로부터 시행한다.

대학발전위원회운영규정

[2021.02.03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 "본교")의 발전계획을 수립·점검·개선하여 대학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구성된 대학발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2.23> [개정 2018.02.2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대학 발전계획 수립
- 2. 대학 발전계획의 주기적인 평가 및 개선
- 3. 기타 대학 발전에 관련되는 주요정책 연구 및 계획 [신설 2016.03.09]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 ② 위원의 규모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03.23>
- ③ 특성화 주관부서의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팀)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의 위원장(팀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03.23]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02.23>

-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02.23> [개정 2018.02.23]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2017.02.23> ②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02.23> [개정 2018.02.23]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02.23 >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8.02.23>
- ③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02.23> [개정 2018.02.23]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02.23]

[신설 2018.02.23]

제8조(대학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 대학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학발전계획수립및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02.03> [본조신설 2018.02.23]

[개정 2021.02.03]

제9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제 규정 및 각종 지침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02.23]

[신설 2018.02.23]

- (1) 이 규정은 2016년03월09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7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18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21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사업예산조정위원회규정

[2016.06.1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사업예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6.06.16]

제2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기획처 기획예산팀으로 한다.

[신설 2016.06.16]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기획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8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6.06.16]

제4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그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06.16]

제5조(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기획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한다.

- 1. 사업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사업 예산 편성 및 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예산운영에 중요 사항

[신설 2016.06.16]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06.16]

제7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팀 예산 담당자가 된다.

[신설 2016.06.16]

제8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16]

제9조(기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16]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6.06.16]

부 칙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구성·운영된 대학사업에 산조정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청렴자문위원회규정

[2024.10.2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예방과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7.04.25]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감사규정제2조제3항에 따른 청탁방지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목실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인사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입학처장, 감사팀장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0.10.22, 2024.10.23.>

- ② 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감사팀장이 겸하고, 서기는 감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10.22, 2024.10.23.>

[개정 2024.10.23]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0.10.22>

- 1.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 2.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3.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0.22]

제4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제3조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 1/3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7.04.25]

제5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04.25]

제6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감사팀으로 한다. <개정 2020.10.22> [개정 2020.10.22]

제7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04.25]

제8조(운영세칙 및 지침)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7.04.25]

- (1) 이 규정은 2017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금운용심의회운영규정

[2023.07.0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사립학교법」제32조의3 및「사립학교법 시행령」제14조의5부터 제14조의6에 따라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9.01.18〕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2.15., 2022.11.30., 2023.07.03.>

-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총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③ 심의회의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 가회사에서 자산운용 또는 위험관리ㆍ평가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 나.「정부기업예산법」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4.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6.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07.03]

제3조(임기) ①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9.01.18]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적립의 목적 설정
- 2. 특정목적 기금의 인출
- 3. 「사립학교법」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 4.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 5.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01.18〕

제5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심의회 회의는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02.26>

[개정 2021.02.26]

제6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내용의 요지를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신설 2021.02.26> ② 심의회는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6> [개정 2021.02.26]

제7조(서면결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갈음한다. [신설 2019.01.18]

제8조(간사) 심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본교의 교직원으로 한다. [신설 2019.01.18]

제9조(소관부서) 심의회의 소관부서는 비서실로 한다, [신설 2019.01.18]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심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대학발전기금조성위원회, 대학복지위원회 및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01.18]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lceil \text{신설 } 2019.01.18 \rceil$

제12조(기밀유지의무) 심의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01.18]

제13조(운영세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9.01.18]

- (1) 이 규정은 2019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20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21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기금운용심의회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후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할 당시 이 규정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원, 직원 또는 재학생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3.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기금운용심의회위원의 구성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정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5) 이 규정은 2023년 07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대학혁신운영위원회운영규정

[2024.12.1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혁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06.>

[개정 2023.12.06]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개정 2024.12.11.>

- 1.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대학혁신지원사업 세부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대학혁신지원사업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관리에 관한 사항(성과지표 평가)
- 4. 대학혁신지원사업 세부 집행 지침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5. <삭제 2024.12.11.>
- 6.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4.12.11]

제3조(구성 및 직무) ① 위원장은 대학교육혁신단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2.11.>

- ② 부위원장은 대학교육혁신부단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11.>
-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외부전문가 및 교무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4.12.11.>
- ④ 위원회에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교육혁신센터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11.> [개정 2024.12.11]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 부위원장, 교무위원인 위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11.>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11]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04.18]

제6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18]

제7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대학교육혁신단 교육혁신센터로 한다. <개정 2019.07.25> [개정 2019.07.25]

제8조(기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18]

제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9.04.18]

- (1) 이 규정은 2019년 0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9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23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

학사운영관리위원회규정

[2019.10.0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사운영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9.10.01]

제2조(기능) 위원회는 학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 1. 수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2. 수업 기간 준수 여부, 휴강 및 보강 이행, 학생 출결관리 등에 대한 사항
- 3. 성적 부여 및 성적 정정, 재수강 제도, 학사경고 제도에 관한 사항
- 4. 학사운영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학사운영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신설 2019.10.01]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는 모든 단과대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교무처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0.01]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매학기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10.01]

제5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무팀장이 된다. $\lceil \text{신설 } 2019.10.01 \rceil$

제6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ceil \text{신설 } 2019.10.01 \rceil$

제7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교무처 교무팀으로 한다. [신설 2019.10.01]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9.10.01]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규정

[2023.04.28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과정에서 인간의 생명윤리 및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강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9.10.01]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소속된 구성원 및 협약기관 구성원이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적용한다.

[신설 2019.10.01]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2.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3.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4.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5.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본교에서 승인된 연구의 진행과정이나 결과가 연구계획서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감독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1. 본교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 2. 취약한 연구대상자의 보호대책 수립
- 3.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 4. 기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업무 <신설 2023.04.28.> [개정 2023.04.28]

제4조(위원회 조직 및 구성) ① 본 위원회는 「생명윤리법」제10조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본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에 있는 기관장인 총장과 연구 관련 보직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04.28.>
- ⑤ 위원회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간사 1인과 본교 교직원인 운영지원인력(행정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23.04.28]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04.28.>
- ③ 위원장은 피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삭제 2023.04.28.>

[개정 2023.04.28]

제6조(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임명(교외의 경우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3.04.28.>
- ③ 총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후임자를 임명(교외의 경우 위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자가 임명(교외의 경우 위촉)되기 전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 해당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04.28.> [개정 2023.04.28]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04.28.>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1.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③ 위원회의 회의는 본교에 재직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가 부결한 사항을 총장이 승인할 수 없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04.28]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경우
-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피심의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파심의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심의·의결의 피심의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9.10.01]

제9조(자문위원)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9.10.01]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9.10.01]

제11조(회의결과 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 명단과 그들의 자격을 기재한 문서 및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된 중요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8.>

② 총장은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 등에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04.28.> [개정 2023.04.28]

제12조(경비지원) ①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총장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 심의를 담당한 위원, 자문이나 강의를 수행한 자, 의견 청취를 위하여 출석하는 외부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4.28.> [개정 2023.04.28]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심의에 관련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3.04.28.> [개정 2023.04.28]

제14조(표준운영지침)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lceil \text{신설 } 2019.10.01 \rceil$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생명윤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신설 2019.10.01]

-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수행한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 래물연구에 대해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
- (2) 이 규정은 2023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창의융합교육센터운영위원회규정

[2024.06.1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창의융합교육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9.07.25]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2.02.28., 2023.08.24., 2024.06.19>

- 1. 창의융합교육센터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2. 융합교육과정 연구개발
 - 가, 융합교육과정 모델 개발
 - 나, 융합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 다. 융합교육과정 설계, 개발 및 편성 방안 연구
- 3. <삭제 2024.06.19>
 - 가. <삭제 2024.06.19>
 - 나. <삭제 2024.06.19>
- 4. <삭제 2024.06.19>
 - 가. <삭제 2024.06.19>
 - 나. <삭제 2023.08.24.>
- 5. 소프트웨어 및 ICT 융합 역량 강화 교육 연구 및 총괄
 - 가, 교양 및 전공 교과목 연구 및 개발
 - 나.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다. <삭제 2022.02.28.>
- 6. 비교과 교육과정 총괄 관리 및 조정
 - 가.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지침, 매뉴얼 관리
 - 나, 영역별 비교과 프로그램 연간 운영 계획(안) 심의 조정
 - 다. 영역별 운영실적 총괄 관리 및 점검
 - 라. 역량강화 장학금 관리
 - 마. 강남ABA 운영 지원
 - 바. 맞춤형 전공심화 역량강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7. KNU참인재시스템 총괄 운영 및 관리 지원
- 8. 창의융합교육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 9. 기타 창의융합교육센터 운영에 중요 사항 [개정 2024.06.19]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창의융합교육센터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③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창의융합교육센터 직원이 된다.

[신설 2019.07.25]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07.25]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07.25]

제6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07.25]

제7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대학교육혁신단 창의융합교육센터로 한다. <개정 2022.02.28.> [개정 2022.02.28]

제8조(기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07.25]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이 규정은 2019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22년 02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23년 0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24년 0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원격수업관리위원회규정

[2021.09.27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1.09.2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 1. 원격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원격교육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 원격교육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4. 원격교육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원격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9.27]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교직원, 학생, 교내·외 관련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부위원장은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이 되며, 실무 지원을 위해 원격교육지원센터의 직원을 간사로 둔다. [신설 2021.09.27]

제4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 간으로 한다. [신설 2021.09.27]

제5조(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09.27]

제6조(회의록) 위원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09.27]

제7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원격교육지원센터로 한다. [신설 2021.09.27]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1.09.27]

부 칙

(1) 이 규정은 2021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강남참여소통위원회규정

[2025.02.1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동문,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강남참여소통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2.01.25]

제2조(위원회의 소속) 본 위원회는 부총장 소속으로 한다.

[신설 2022.01.25]

제3조(위원회의 사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할한다. <개정 2025.02.19.>

- 1. 본교 구성원 참여소통 운영계획 수립
- 2. 소관부서별 참여소통 이행실적 및 환류 체계 모니터링
- 3. 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소관부서별 의견수렴 결과 검토 및 적용 방안 마련
- 4.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제도 및 규정 정비
- 5. 기타 구성원 참여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02.19.>
- 1.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 2. 대학의 효율적 운영과 구성원 참여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 3. 삭제<2025.02.19.>
- 4.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및 반영결과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02.19]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 ② 위원의 규모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 ③ 대학장 및 실·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④ 학생 대표, 교원 대표, 직원 대표를 위원으로 포함한다.

[신설 2022.01.25]

제5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lceil 신설 \ 2022.01.25 \rceil$

제6조(회의)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3.12.06.>

- ②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06.>
-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23.12.06.>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3.12.06.>
- ⑤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12.06.> [개정 2023.12.06]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06.> [개정 2023.12.06]

제8조(간사 및 실무위원)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06.>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2.06.> [개정 2023.12.06]

제9조(관계부서 및 관계인의 협조) 위원회는 관계부서 및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및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 또는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06.>

[개정 2023.12.06]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3.12.06.> [신설 2023.12.06]

- (1) 이 규정은 2022년 01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23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25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대학혁신위원회규정

[2022.05.1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2.05.1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하고 연구한다.

- 1. 재정지원사업 운영의 총괄적 점검 및 자율혁신계획과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투자 계획 수립
- 2. 본교 중장기 발전 전략에 근거한 재정지원사업 간 총괄·연계 방안 및 성과평가·환류방안 제시
- 3.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환류 및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 4. 재정지원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한 계획 수립
-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22.05.10]

제3조(구성 및 직무) ①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총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교무위원, 주요 사업 책임자, 재학생을 포함한다.
- ④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신설 2022.05.10]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05.10]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05.10]

제6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ceil \text{신설 } 2022.05.10 \rceil$

제7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기획처 기획예산팀으로 한다.

[신설 2022.05.10]

제8조(기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 내용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lceil \text{신설 } 2022.05.10 \rceil$

제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2.05.10]

부 칙

(1) 이 규정은 2022년 0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비교과교육과정총괄위원회규정

[2022.05.25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비교과교육과정총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2.05.25]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1. 비교과 프로그램 연간 운영 계획(안)
- 2.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실적 점검
- 3.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 계획(안)
- 4.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지침의 제정과 개정
- 5. 기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중요 사항

[신설 2022.05.25]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
- ④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창의융합교육센터 직원으로 한다.

[신설 2022.05.25]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05.25]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05.25]

제6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05.25]

제7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대학교육혁신단 창의융합교육센터로 한다.

[신설 2022.05.25]

제8조(기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05.25]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2.05.25]

부 칙

(1) 이 규정은 2022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진흥위원회규정

[2023.01.27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3.01.2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진흥 정책 및 전략 수립
- 2. 교원의 연구 활성화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제도 기획
- 3. 연구윤리 문화 확산 및 연구윤리 교육 관련 정책 수립
- 4. 연구와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기획
- 5. 기타 위원회에서 연구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설 2023.01.27]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처장, 연구부처장,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은 단과대학, 전공 및 학문분야 등을 고려해 인사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하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팀 팀장이 된다. 「신설 2023.01.27〕

제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소관하며 위원회에 운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분과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3.01.27]

제5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01.27]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01.27]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01.27]

제8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인사팀으로 한다. [신설 2023.01.27]

제9조(기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01.27]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3.01.27]

부 칙

(1) 이 규정은 2023년 0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교육과정혁신위원회운영규정

[2024.12.1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 과정혁신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교육과정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3.03.24]

제2조(교육과정혁신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혁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부서별 교육혁신 계획 이행 점검 등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장 산하에 교육과정혁신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무분장규정 제16조의3 제2항 제1호와 제4호에서 정하는 교육혁신센터의 분장사무에 관하여 해당 부서를 지휘 및 통할할 수 있다. [신설 2023.03.24]

제3조(교육과정혁신위원회의 역할, 기능 및 권한) ① 위원회는 교육과정, 수업 및 학습성과관리체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학생 성공을 위한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주도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습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요구와 특성에 따른 수업 및 학습성과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학생의 학습성과 제고, 지속가능한 혁신과제 제시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교육혁신센터로부터 관련 사무를 보고 받고 이행사항을 점검 및 심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정책적 의사를 결정 및 제안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교육과정혁신을 위해 대학의 규정 및 지침의 개선을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03.24]

제4조(교육과정혁신위원회의 사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 1. 교육과정체제 혁신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관리
- 2. 교과과정 혁신
- 3. 수업 혁신
- 4. 학생 성공역량 강화 교육과정 혁신
- 5. 학생 학습 성과 관리 및 학습지원 체제 혁신
- 6. 기술 활용, 개별화, 공유, 개방을 통한 미래 고등교육과정 모형 연구 및 대내외 홍보
- 7. 그 밖에 교육과정혁신과 관련된 중요사항
- ② 위원회 사무 및 교육혁신센터의 역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정혁신위원회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3.03.24]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씩 둔다.

- ②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대학교육혁신단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11.>
- ③ 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인사처장, 입학처장, 총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위원장이 추천하는 교육과정 혁신 전문가 3인 이내
 - 2. 대외환경변화 및 산업계 요구를 제안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 3. 단과대학 학장 중 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 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교육혁신센터 센터장, 서기는 교육혁신센터 팀장이 된다. [개정 2024.12.11]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03.24]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월 교무위원회가 개최되는 주 화요일에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03.24]

제8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03.24]

제9조(기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03.24]

제10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03.24]

제11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3.03.24]

- (1) 이 규정은 2023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

재정관리위원회운영규정

[2023.04.28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의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에 따라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재정운영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재정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3.04.2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련된 사항
- 2.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에 따른 주요 정책방향 결정 및 이와 관련된 사항
- 3. 재정관련 주요 대·내외 환경변화 검토 및 대응과 관련된 사항
- 4. 각 행정부서 및 학부(과) 예산 책무성 강화와 관련된 사항
- 5. 민자유치 및 수익창출 등 재정수입 극대화를 위한 재정조달과 관련된 사항
- 6. 기타 재정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
- 7. 그 밖에 대학구성원이 대학의 재무 및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신설 2023.04.28]

제3조(소관부서) 위원회는 부총장 산하에 설치하며, 소관부서는 기획처 기획예산팀으로 한다. [신설 2023.04.28]

제4조(구성) 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12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재정관련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04.28]

제5조(임기) 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04.28]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04.28]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서기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04.28]

제8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 혹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04.28]

제9조(기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04.28]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3.04.28]

부 칙

(1) 이 규정은 2023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교육과정혁신위원회운영지침

[2023.07.31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과정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3.07.31]

제2조(위원회의 사무 및 기능과 역할) 위원회는 교육혁신센터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을 심의하여 필요한 정책적 의사결정 및 제도를 개선한다.

- 1. 교육과정체제 혁신계획 수립 및 관리
- 가. 교육과정혁신 방향 및 목표, 교육과정혁신지표 설정 및 월별 이행 점검
- 나. 학생중심 학사제도 개선 및 선진 학사제도 도입 제안 및 월별 이행 점검
- 다. 국내외 대학 교육혁신 관련 월례 동향 점검
- 라. 교육활동 및 교육성과 관련 월례 지표 점검
- 2. 교과과정 혁신
- 가. 정기교육과정 개편 주기별 교양교육 혁신 방향 및 교양교육 체제 확정
- 나. 연도별 교양교육 혁신 방향 점검 및 교무처 교양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제시
- 다. 연도별 교양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교무처 기본계획(안) 심의 및 확정
- 라. 정기교육과정 개편 주기별 전공교육 혁신 방향 및 전공교육 체제 확정
- 마. 연도별 전공교육 혁신 방향 점검 및 교무처 전공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방향 제시
- 바. 연도별 전공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교무처 기본계획(안) 심의 및 확정
- 3. 수업 혁신
- 가. 분기별 국내외 우수 수업혁신 사례 벤치마킹 및 사례적용 계획 심의
- 나. 연도별 수업혁신 목표 및 교수학습혁신 전략 제시, 연도별 이행상황 점검 및 조치
- 다. 학기별 수업혁신을 위한 교수역량 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조치
- 라. 연도별 학생평가제도, 평가방법 개선안 제시 및 이행 점검 마.
- 학기별 강의평가 결과 진단, 후속조치, 개선상황 점검 및 조치 바.
- 학기별 교수-학생, 학생-학생 상호작용 강화 상황 점검 및 조치
- 4. 학생 성공역량 강화 교육과정 혁신
 - 가, 분기별 학습자 경험중심 교과연계 비교과 과정, 비교과 프로그램 국내외 우수 사례 벤치마킹 및 도입 제안, 연도별 이행상황 점검 및 조치
 - 나, 학생성공을 위한 핵심역량 관리 체계 구축 및 월별 학생활용 현황 점검 및 조치
 - 다. 학기별 학생성공 관점의 교육성과 진단, 환류 및 조치
 - 라. 현장형 교육훈련 교육환경 조성계획 수립 및 학기별 이행상황 점검 및 조치
 - 바. 연도별 교내 취업우수사례, 창업우수사례 발굴 및 대내외 홍보 계획 심의
- 5. 개별 학습 성과 관리 및 학습지원 혁신
- 가. 학기별 빅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 국내외 우수 사례 벤치마킹 및 사례도입 제안, 이행상황 점검 및 조치
- 나. 분기별 학습 성과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분야 제안 및 학기별 이행상황 점검 및 조치
- 다. 학기별 AI 활용 개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사례도입 제안, 연도별 이행상황 점검 및 조치
- 6. 기술 활용, 개별화, 공유, 개방을 통한 혁신 교육과정 제시 및 대내외 홍보
 - 가. 학기별 국내외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활성화 추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사례도입 제안, 연도별 이행 점검 및 조치
 - 나. 학기별 국내외 교육과정 모듈화 등 개별학습 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사례도입 제안, 연도별 이행 점검 및 조치
 - 다. 학기별 교육콘텐츠의 개방성 확대 추진 및 연도별 이행 점검
- 라. 학기별 국내외 타 대학과 교육과정 공유 추진 및 연도별 이행 점검
- 7. 그 밖에 교육혁신과 관련된 중요사항 [신설 2023.07.31]

제3조(교육혁신센터의 보고 및 심의 등) ① 교육혁신센터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기회의에 관련 사무에 대한 사항을 안건으로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교육혁신센터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결과, 정책적 결정사항, 후속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한다.
- ③ 교육혁신센터는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에 대한 이행상황을 위원회가 점검할 수 있도록 차기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 다. [신설 2023.07.31]

제4조(연차보고서) ① 교육혁신센터는 매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본 지침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운영 및 성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각화된 팜플렛 형태의 요약문을 첨부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연차보고서의 요약문을 활용해 본교 교육과정 혁신내용과 혁신성과를 교내외에 홍보해야 한다. [신설 2023.07.31]

부 칙

(1) 이 지침은 2023년 0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성과관리위원회규정

[2025.02.1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대학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3.11.0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한다.

- 1. 데이터 기반 대학 교육 질 관리
- 2. 데이터 수집, 분석 및 활용
- 3. 대학 성과지표 관리 및 개선
- 4.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분석 및 환류
- 5. 대학 자체평가 계획 수립, 시행 및 환류
- 6. 주요 외부 대학 평가 [신설 2023.11.01]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02.19.>

- ② 기획처장, 교무처장, 인사처장, 총무처장, 입학처장, 학생처장, IR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③ 이 외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총 인원은 15인 이내로 한다.
- ④ 대학성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02.19]

제4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1.01]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1.01]

제6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IR센터 팀장이 간사가 된다. [신설 2023.11.01]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01]

제8조(소관부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기획처 IR센터로 한다. [신설 2023.11.01]

제9조(기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01]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3.11.01]

- (1) 이 규정은 2023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25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